

---

# **제2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**

## **정책건의서**

---

**2017. 12. 15**

**KBIZ 중소기업중앙회**



# Contents

1. 화평법 개정 대비 염·안료 화학물질 등록 지원 대책 마련 ..... 1  
-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-
2.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지원 사업 실효성 강화 ..... 3  
- 한국폐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-
3. 폐수배출시설 공정별 약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..... 4  
-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-
4.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..... 5  
-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,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-
5.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..... 6  
-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,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-
6.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..... 8  
-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 -
7. 자동차 폐타이어 회수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..... 10  
-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-
8. 부처 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일원화 ..... 12  
-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-
9. 제품 포장방법(포장공간비율) 기준 현실화 ..... 14  
-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-
10.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한 보관시설 기준 현실화 ..... 16  
-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-
11. 바이오디젤 제조용 정제식용유에 대한 재활용제품 인정 ..... 17  
-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-



【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】

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정부 ‘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(’16. 11. 29일)’ 수립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화평법”) 개정 예정
- 법 개정시 ’30년까지 모든 기존화학물질(기존 2,300종 → 개정시 7,000종)로 등록의무가 확대, 등록 비용 발생에 따른 영세 화학 중소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우려
  - 특히 염·안료 제조업의 경우 색상에 따라 원료 및 제품 물질이 상이한 특성으로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,
  - 법 개정 시 화학물질 500 ~ 700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함에 따라 예상 등록 비용이 1,000억원 이상으로 추정, 공장의 해외 이전 또는 폐업 등을 고려 중
- 등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사업 포기 및 한정적 제품 생산에 따라 연관 전방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
  - 대표적으로 유기 염·안료, 표백제, 섬유 보조제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염색 가공업체들은 원자재 수급(수입 및 국내 조달)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원단 제조업, 봉제 가공업 및 섬유패션산업\*도 침체, 해외 이전 가속화 및 일자리 감소 우려
- \*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통계(’14년)
  - 47,408개 기업(제조업의 12%), 종업원 수 304,993명 종사(제조업의 8%)
- ※ 유럽의 경우 Reach 시행 이후 염·안료 산업이 해외로 이전, 관련 산업 (섬유 산업)이 연쇄 붕괴 중에 있음
- 염·안료업은 섬유 산업부터 최신 디스플레이 소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color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정부는 전략적으로 이를 보호·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

## | 건의사항 |

- 염·안료업 특화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 별도 추진 요청
  - 염·안료업 제조·수입 화학물질 목록(인벤토리) 작성
  - 국내외 시험자료 존재 여부, 출처 확인 등 데이터 캡 분석
  - 유사한 특성을 지닌 화학물질 분류 작업 지원
  - 염·안료업 화학물질 등록 예상 비용 구체적 산정
  - 국내 염·안료 업종 및 전·후방 산업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(원료 물질 및 제품물질) 등록비용 지원 등

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'15년 화관법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해야 영업 가능
  - \*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(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·제출) :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·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출
-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통 컨설팅 업체에 작성을 위탁, 1건 당 약 1,500 ~ 2,000만원 비용 발생
-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을 위해 작성지도 컨설팅을 운영 중이나, 지원 대상 수가 매우 적고 실효성이 적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
  - 작성지도 지원 사업장 : 100개('15년) → 150개('16년) → 150개('17년)
  - 또한 작성 지도 컨설팅을 받고 화학물질안전원의 작성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우수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음

## | 건의사항 |

-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
  - 컨설팅 업체와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컨설팅업체로 하여금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, 평가서 제출 및 보완을 완료하게 하고 정부는 비용을 직접 지원(규모에 따라 업체가 비용 일부 분담)
- ※ 컨설팅 비용 지원 사례
  - 경기도 뿌리기업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컨설팅 지원 : 기업당 1,500만원 이내(자부담은 총 비용의 30% 정도)
  - (화평법) 중소기업 공동등록 이행 컨설팅 지원 : 공동등록 협의체 당(또는 기업 당) 2,000만원

### 3

## 폐수배출시설 공정별 약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

【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】

#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약취를 유발하는 시설(약취배출시설)을 설치하려는 자는 방지시설 설치 등 약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.
  - 현행 약취방지법은 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전체(수질오염방지시설,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 처리업의 처리시설(저장시설 포함))을 약취배출시설로 규정\*
- \* 「약취관리법」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
- 약취 정도, 화학반응 유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폐수처리 전체 공정을 약취배출시설로 지정, 폐수처리 전체 공정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들의 부담 심화
  - 폐수처리시설 중 화학약품이 투입되지 않거나, 약취 정도가 미약한 공정시설에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
  - 기타 시설의 경우 시설의 용량 또는 배출 오염물질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약취배출시설로 지정
- ※ 기타 시설에 대한 약취방지시설 지정 기준
  - (살충제 제조시설) : 용적이  $1\text{m}^3$  이상인 반응, 흡수, 응축, 정제, 농축,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
  - (표면처리시설) : 용적이  $5\text{m}^3$  이상이거나 동력이  $2.25\text{kW}$ 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

### | 건의사항 |

- 약취배출시설 지정시 폐수처리시설 공정별 세분화
  - 폐수처리시설 공정중 응집·침전·부상·여과·탈수·농축시설 등 화학약품이 투입되지 않고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 시설 등은 약취배출시설에서 제외
- 약취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마련
  - 약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약취가 극소량일 경우 등

## 4

#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

【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,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】

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'16. 2월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경상남도 내 13개 시·군의 68개 읍·면·동 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나,
  - 출판·인쇄·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등 일부시설은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가능
    - \* 「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」(환경부고시 2016-41)
- 그러나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타 업종 사업장의 경우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포함\*, 해당지역에 금속가공제품 제조 공장의 입주가 불가능하며, 기존 시설은 폐업을 해야 하는 실정
  - 일체형 기계 또는 시설의 제품 가공 시 사용되는 수용성 절삭유는 시설 내에서 계속 순환하여 재사용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배출되며,
  -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'폐유'로 간주되어 전량 위탁처리 되고 있음
- 수용성 절삭유 배출물질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, 이중규제로 판단됨
  - 또한 일부 업종에 한하여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

## | 건의사항 |

-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의 낙동강 하류 유역 설치 인정
  -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을 낙동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제한 대상에서 제외

## 5

#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

【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,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】

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특정대기유해물질(총 35종)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설치허가를 득할 것을 규정\*하고 있으며,
  - \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2
  - 이를 준용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71조는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불허
- 그러나 설치허가대상 적용기준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25종의 물질에 대해서 대기 중이나 실내에서 얼마든지 검출 가능한 수준인 정량한계\* 기준을 적용,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
  - \* 지정된 방법으로 정해진 물질계에서 어떤 성분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농도
  - 정량한계 기준은 분석기기의 모델·제조사·유지보수 프로그램, 실험실 조건, 분석 숙련도 등에 따라 검출치가 상이하게 변동
  - ※ 미국환경보호청(US EPA)과 미국화학학회(American Chemical Society)는 정량한계가 실험매질, 실험조건, 실험자 숙련도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의견
- 또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근거한 ‘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’ \*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-41호(2016.8.22.))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치허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
  - \* “노출기준” :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

## | 건의사항 |

-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고용노동부 「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」의 50% 수준으로 개선

- 근로자는 밀폐된 실내에서 상시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반면, 일반 국민은 대기 중에 희석된 농도에 간헐적으로 노출, 제도 개선 시 인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

특정대기 유해물질	대기환경보전법 현행		산업안전 보건법	건의(안) 요구기준	비 고
	배출 허용기준	설치허가대상 적용기준	화학물질 노출기준		
염소(Cl) 및 염화수소(HCl)	3ppm	0.4ppm	0.5ppm(Cl) 1ppm(HCl)	0.8ppm	노출기준의 80%
카드뮴 및 그 화합물(Cd)	0.5mg/m³	0.01mg/m³	0.01mg/m³	0.01mg/m³	
납 및 그 화합물(Pb)	2mg/m³	0.05mg/m³	0.05mg/m³	0.05mg/m³	
크롬 및 그 화합물(Cr)	0.5mg/m³	0.1mg/m³	0.5mg/m³	0.2mg/m³	노출기준의 40%
니켈 및 그 화합물(Ni)	2mg/m³	0.01mg/m³	1mg/m³	0.02mg/m³	정량한계
페놀화합물 (C6H5OH)	5ppm	0.2ppm	5ppm	1ppm	노출기준의 20%
불소화합물(F)	3ppm	0.05ppm	0.1ppm	0.08ppm	노출기준의 20%
포름알데히드 (HCHO)	10ppm	0.08ppm	0.3ppm	0.16ppm	노출기준의 60%
시안화수소 (HCN)	5ppm	0.05ppm	-	0.05ppm	
벤젠(C6H6)	10ppm	0.1ppm	0.5ppm	0.25ppm	노출기준의 50%
비소 및 그 화합물(As)	2ppm	0.003ppm	0.01mg/m³	0.01ppm	
디클로로메탄 (CH2Cl2)	50ppm	0.5ppm	50ppm	1ppm	노출기준의 20%
수은 및 그 화합물(Hg)	0.05 mg/m³	0.0005mg/ m³	0.01mg/m³	0.001mg/m³	노출기준의 10%
염화비닐 (CH2CHCl)	10ppm	0.1ppm	1ppm	0.1ppm	노출기준의 20%

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일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아스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·단속 없어 아스콘 업계 혼란 초래
  - “중간처리업” 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·선별·파쇄하는 영업을 의미\* 하며, 이 과정에서 순환골재가 생산되므로 순환골재(순환아스콘(재 활용제품)의 원료)생산까지 중간처리업자의 영업범위로 볼 수 있음
    - \* 「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건폐법”) 제2조 제4호
- 그러나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내 구비시설 중 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’을 포함, 중간처리업자의 아스콘 재활용제품 생산을 가능케 하고 있음 → 상위법 우선 원칙에 위배
  - \*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2 「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」 2.
- 동일한 아스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, 제조업·서비스업 차이에 따라 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, 이는 제품의 가격경쟁력 차이로 이어져 산업 간 불균형 초래
  - 순환아스콘 제조업자는 중간처리업자로부터 순환골재를 매입·생산함에 따라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 수급량 조절이 가능하여 제조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며, 중간처리업자가 순환아스콘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 제조업자에 비해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음
  - 또한, 중간처리업자는 표준산업분류상 ‘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 재생환경복원업(E)’으로 분류, 「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상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에서 제외

- 특히 중간처리업자는 주거·상업지역 등 비교적 도심과 가까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「관리지역」에 입지가 가능\*하여 제조업자 대비 운반 비용 절감 가능
  - \* 중간처리업자는 건축법 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(폐기물재활용시설)로 분류, 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하지만 제조업자는 '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이외 입지 불가능
- 반면 제조업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공장 신설·증설·업종 변경이 불가하며, 건축·영업허가 등도 받을 수 없음

※ 환경부, 과거 2차례('12년, '14년) 건폐법 제2조 제4호 '중간처리업' 범위 개정을 통해 중간처리업자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건폐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업종간 갈등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개정안 폐기

☞ “… 정부안(중간처리업 영업범위 개정)은 …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업체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… 제조업체는 생산 원재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, 중간 처리업자가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경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고 서로 충돌사항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음”

<건폐법 개정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, '13. 4. 15일>

☞ “… 법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순환골재 원료 공급을 위주로 하던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자신들이 생산하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재생아스콘 등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을 위주로 하게 됨에 따라 중간처리업체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업체에게 판매하던 순환골재 양이 줄게 되고, 이로 인하여 재생아스콘 제조업체 등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업체는 생산 원재료 수급 곤란으로 인하여 경영상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음 … ”

<건폐법 개정 법률안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, '13. 4월>

→ 환경부는 과거 건폐법 개정안을 제출시 중간처리업의 정의에 '재활용제품의 제조'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고 개정을 추진하였는 바, 이는 환경부 역시 중간처리업의 범위에 재활용제품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

### | 건의사항 |

-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개선, 업무영역 명확화
  -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→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를 위한 원료 생산시설

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폐타이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\* 품목으로서, 폐타이어 재활용 의무가 있는 타이어 제조·수입업체는 재활용 업무를 대한 타이어산업협회(이하 “협회”)를 통해 수행
  - \*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    - 제조·수입업자로 하여금 생산·수입하는 제품·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회수·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
    - 협회는 31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게 정비업체(카센터)에서 배출되는 폐타이어를 수집·운반하도록 업무를 위탁
- 그러나 협회는 회수·처리업체에게 운송원가를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고 있어 재활용업체들이 폐타이어 수거를 기피, 자동차 정비업체에 폐타이어들이 다량으로 방치되고 있음
  - 폐타이어 운송 적정 원가는 톤당 약 7만원 정도이나 재활용업체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톤당 5만원\* 밖에 단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수거 기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으며, 부족분을 정비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음
    - \* 협회 3만원 + 폐타이어 수요 업체(시멘트 社) 2만원
  - 장기간 폐타이어 방치 시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 및 도시경관 훼손 우려
- 자동차 정비업체는 폐타이어를 보관할 부지가 부족한 형편, 축소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차량 정비 시 애로·불편 발생함에 따라 비용을 들여 재활용업체(또는 타이어 판매 대리점)에게 회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

- 정비업체는 폐타이어 개당 300원 ~ 3,000원(농기계 폐타이어의 경우 개당 30,000원)을 부담하고 있으며, 1회 수거 요청 시 최대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실정

### | 건의사항 |

- 정비업체에 방치된 폐타이어가 신속·적절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대책(제도 보완 또는 정비업체 지원사업 등) 마련
    - ex) 정부는 폐타이어 재활용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회수·재활용 최소 단가 및 협회의 정비업체 손실 보전 방법 등 규정
  -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상향 조정  
(6개 시멘트 제조사에 대한 폐타이어 공급량 확대)
    - (현행) 76.7% → (변경 안) 90% 이상
- ※ 폐타이어의 공급량이 시멘트 제조업체의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해외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

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어린이(13세 미만) 제품 안전성과 관련, 환경부의 「환경보건법」 및 산업부의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 의거하여 관리\*되고 있으나, 제품 내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화학물질에 대하여 상이한 기준을 적용, 영업에 혼선 초래
  - \* 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) 제3조 별표 「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」(산업부고시) 3. 유해물질 안전요건
- 환경보건법은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에 포함된 '프탈레이트계 물질(DNOP, DINP)'에 대한 경구 및 경피 노출 전이량\* 측정 시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을 어린이 용도로 사용·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
  - \*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경구·경피노출, 흡입노출 등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양
- 반면,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되거나 3세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에 중 '프탈레이트 가소제(DNOP, DINP, DEHP, DBP, BBP, DIDP)' 총 함유량이 0.1% 미만인 경우 안전 인증(KC)을 부여하고,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제품 판매·사용을 금지
- 1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함에 따라 완구 제조사는 검사 비용을 증복 지불하고 있으며, 검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
  - 양 법률을 제대로 숙지 못한 경우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환경 보건법 위반으로 수거·폐기명령을 받는 사례도 발생, 업계 혼란 야기

## | 건의사항 |

- 양 부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일원화
  - 적용기준 및 시험방법 통일 · 재정비(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치 / 시험방법(함유량) 준용)
  - KC검사에 환경보건법 상 시험기준 항목 추가하여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제품 관리 항목 삭제
- ※ 국가기술표준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부처간 이중규제로 동일한 안전기준 운영이 필요한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, 이중규제 개선 시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

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\*
  - \*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재활용법”) 제9조
  - 완구·인형류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35% 이하로 함\*
    - \* 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2항 별표1
- 완구·인형류 제품의 경우 포장재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제품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, 포장공간비율 제한에 따라 포장경쟁력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
  - 완구·인형류 특성상 제품 종류별로 크기·모양이 상이, 포장공간 비율 기준 준수를 위해 포장재를 규격을 달리하여 별도 제작해야 함에 따라 비용 증가
  - 수입품의 경우 해외 제품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포장재를 제조하여 다시 포장, 이는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재활용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남
- 해외국가 대부분 완구에 대한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어 포장 비용 저렴(1개 규격으로 획일적 포장 가능), 해외 제품이 국내 제품에 비해 원가경쟁력 우세
  - 해외 직구제품은 포장비율규제 적용 없이 국내에 유통 가능
  - 국내에서 생산된 글로벌 캐릭터 제품의 경우 포장재가 타 국가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가품으로 오인받는 실정
- 또한 합성수지 원료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\*를 통해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폐기물

발생 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최종제품의 포장공간비율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로서 과도하다는 판단

\*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 이용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제도(재활용 이행 위해 재활용분담금 납부)

### | 건의사항 |

- 종이류 포장재 사용 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5% 가산, 사업자의 포장 재량 확대
  - 종이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률 최소화 가능, 합성수지 소재 포장재와의 차등 필요
- ※ 과거 종이 · 골판지 · 펄프볼드로 제조된 받침 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해 포장공간비율을 5%씩 가산하였으나, '12년 시행규칙 개정 시 동 내용 삭제
- 제품의 특성상 공간비율 준수가 어려운 패키지 제품(ex. 동일 포장지 내 제품 사이즈가 다른 경우 등)에 대한 5% 가산 특례 조항 마련

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폐기물 중간·최종·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(지정폐기물 제외)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\*
  - \*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제3항,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
- 동물성잔재물 재활용업계는 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(동물 잔재물 중 폐지방·뼈 등)의 특성에 따라 수거 후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함
  - 동물 폐지방 또는 뼈를 상온에 방치 시 2~3시간 후부터 빠른 속도로 부패가 진행되며,
  - 특히 하절기의 경우 시간 당 산가(acid value)가 3~4로 상승하는 등 2일 정도 경과 시 심각한 악성폐기물로 변질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
- 따라서 동 업종 특성상 폐기물 보관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의 2일분 정도의 시설이면 충분함에도 불구, 협약조건이 10일분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지·보관시설 확보·유지로 인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
-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폐기물 1일 처리량을 보관시설 용량에 비례하여 제한\*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과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실정
  - \* ex) 보관용량 100t일 경우 처리량 10t에 한해 협약

## | 건의사항 |

-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개선
  -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→ 2일분 이상

## | 현황 및 문제점 |

- 가정 및 음식점에서 배출된 폐식용유는 수거 · 정제된 후 바이오디젤 제조용 원료제품으로 납품되거나, 사료 · 비료 · 퇴비로 사용
- 재활용 공정을 마친 정제식용유는 외견 · 성분 등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료 · 비료 · 퇴비용 정제식용유는 원료사료의 한 종류로서 재활용제품으로 인정\*되는 반면 바이오디젤용 정제식용유는 폐기물로 분류
  - \*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
-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7-28호)에 따르면 정제된 식물성 식용잔유가 산가(acid value) 30 이하인 경우 단미 사료\*로 인정
  - \* 식물성·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(사료원료용, 양축농가용, 애완동물용 등으로 사용)
- 바이오디젤 원료용 정제식용유(식물성 식용잔유)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산가(acid value) 20 ~ 40 이하, 색상(IV) 100 이상, 수분 0.5% 이하 기준을 유지해야 함에 따라 사료용 정제식용유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관리되고 있음
- 품질 · 성분 등의 큰 차이가 없으나 사용처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폐기물과 재활용제품으로 차별된 법 적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
  - 정제 완료된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제조용 원료라는 이유로 ‘폐기물’로 규제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각종 부담 · 의무 발생

## | 건의사항 |

- 바이오디젤 원료용 정제식용유에 대해 재활용제품 인정 요망
  - 바이오디젤 원료용 정제식용유에 대한 규격 · 품질 기준을 별도 마련,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한해 재활용제품으로 인정